Haemil Town
해밀타운

제주 함덕 해밀타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6.11.1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03.29입니다.(청약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 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청약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07.09.01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8조 규정에 의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수, 입주자저축(청약예금, 종합저축 등)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가 우선 적용 됨(주택형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40%, 추첨제 60% 적용 됨)
- 2순위 청약자의 편이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개별은행에 2순위 청약 신청금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3.29)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제주내외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는 청약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청약 순위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1년 이상 거주자(2016.03.29 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 합니다.
- 청약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청약자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미성년자 세명 이상인 자녀를 둔 자 중 주택공급신청등록일과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함)
- 전매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전매금지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분양권 전매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제2항의 제한에 의한 재당첨 제한은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가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통장은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 함)
  - 전매 금지 및 재당첨 제한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청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6조, 제38조에 의거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0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업무 중 동·호수 배정 업무는 금융결제원에서만 실시합니다.
(다만,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 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만 실시 함)
-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청약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은 1인 2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2건 이상 신청 시 신청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본 아파트는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위탁자 주식회사 굿니스디벨로퍼먼트와 수탁자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가 2016.11.29 일자로 체결한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되는 것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시 주택과 – 282953호(2017.03.29)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3052-1번지 외 8필지 ■ 대지면적 : 1,670,0㎡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지상 8층 총 5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7,842.76㎡)
[기관추천 특별공급 6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6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6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1세대 포함]

▣ 전체 공급대상 및 면적

구분	아파트 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면적기준)	타입	세대별 개별면적(㎡) 세대별 공급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포함)	계약면적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특별공급 계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공급	최저층 우선배정세대	입주예정시기
민영주택	2017000393-01	47.4500㎡	47A	47.4500	13.6600	61.1100	11.5839	72.6939	15.2278	7	1	1	1	–	4	1	2018.02
	2017000393-02	64.5900㎡	64A	64.5900	17.6451	82.2351	15.7683	98.0034	20.7284	7	1	1	1	–	4	1	
	2017000393-03	78.9200㎡	78A	78.9200	21.4778	100.3978	19.2667	119.6645	25.3273	14	1	1	1	–	11	1	
	2017000393-04	84.8200㎡	84A	84.8200	22.7035	107.5235	20.7072	128.2307	27.2207	28	3	3	3	1	18	4	
합 계										56	6	6	6	1	37	7	

※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무상 시공)되며, 발코니 비확장은 선택할 수 없으므로 분양홍보관 및 카다로그 등으로 호별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타입	공급세대수	층구분(라인)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1회 2017.04.30 10%한정	2회 2017.07.20 (20%)	3회 2017.08.20 (20%)	잔 금 2017.11.20 (20%)	입주지정일 (30%)
47.4500㎡	47A	7	3~4 층	17,941,000	169,159,000	187,100,000	7,000,000	11,710,000	37,420,000	37,420,000	37,420,000	56,130,000
			5~8 층		173,059,000	191,000,000	7,000,000	12,1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57,300,000
		2	3~4 층		176,959,000	194,900,000	7,000,000	12,490,000	38,980,000	38,980,000	38,980,000	58,470,000
			5~8 층		226,133,000	250,800,000	10,000,000	15,080,000	50,160,000	50,160,000	50,160,000	75,240,000
64.5900㎡	64A	7	3~4 층	24,667,000	231,433,000	256,100,000	10,000,000	15,610,000	51,220,000	51,220,000	51,220,000	76,830,000
			5~8 층		236,633,000	261,300,000	10,000,000	16,130,000	52,260,000	52,260,000	52,260,000	78,390,000
		2	3~4 층		247,962,000	279,000,000	10,000,000	17,9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83,700,000
			5~8 층		253,762,000	284,800,000	10,000,000	18,480,000	56,960,000	56,960,000	56,960,000	85,440,000
78.9200㎡	78A	14	3~4 층	31,038,000	259,562,000	290,600,000	10,000,000	19,060,000	58,120,000	58,120,000	58,120,000	87,180,000
		2	1 층		257,562,000	288,600,000	10,000,000	18,860,000	57,720,000	57,720,000	57,720,000	86,580,000
			3~4 층		263,562,000	294,600,000	10,000,000	19,460,000	58,920,000	58,920,000	58,920,000	88,380,000
			5~8 층		269,562,000	300,600,000	10,000,000	20,060,000	60,120,000	60,120,000	60,120,000	90,180,000
		2	4 층		278,667,000	309,700,000	10,000,000	20,910,000	61,820,000	61,820,000	61,820,000	92,730,000
84.8200㎡	84A	28	3~4 층	32,433,000	283,167,000	315,600,000	10,000,000	21,560,000	63,120,000	63,120,000	63,120,000	94,680,000
			5~8 층		288,567,000	322,000,000	10,000,000	22,200,000	64,400,000	64,400,000	64,400,000	96,600,000

- 주택공급신청시 접수일자 및 등급은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 접수일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청약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접수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등급결정 : 청약신청 시 청약가점 선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선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하도록 함 (문양홍보 라인)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선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 (해당자)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당사 분양홍보관에 비치. 무주택세대 구성원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입지,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청약통장순위기간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순위기간을 나타내는 서류 (국가유공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기관추천 (일반) 특별공급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분리세대 등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다자녀 특별공급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제출기점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	본인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가족수 5인이 경과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연월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	자녀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임신부모님과 동일) 또는 출산증명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임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자녀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서	본인 (또는 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 서류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확정 상태이어야 함
	○		소득증빙 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확정 상태이어야 함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는 소득증빙서류) [표1 소득증빙서류 참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과 본인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주택공급 신청하는 경우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임양증명서	자녀	입양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자녀	입양의 경우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자녀	친양자 입양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본인과의 관계 확인
	○		위임장	대리인	세대원 전원 서명
	○		인감증명서	대리인	세대원 전원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대리인	세대원 전원 인감날인
제자녀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대리인	본인
	○		위임장	대리인	본인
	○		주민등록증	대리인	세대원 전원
	○		인장	대리인	세대원 전원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득자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신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처리되어 당첨에 불이익 발생 가능 하는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이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①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하고자 하는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그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3.29) 현재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는 청약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청약 순위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1년 이상 거주자(2016.03.29 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 합니다.
- 청약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청약자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미성년자 세명 이상인 자녀를 둔 자 중 주택공급신청등록일과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함)
- 전매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전매금지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분양권 전매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제2항의 제한에 의한 재당첨 제한은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가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통장은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 함)
  - 전매 금지 및 재당첨 제한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청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6조, 제38조에 의거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0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업무 중 동·호수 배정 업무는 금융결제원에서만 실시합니다.
(다만,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 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만 실시 함)
-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청약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은 1인 2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2건 이상 신청 시 신청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본 아파트는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위탁자 주식회사 굿니스디벨로퍼먼트와 수탁자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가 2016.11.29 일자로 체결한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되는 것입니다.

II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특별공급 신청세대 공통사항(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태아 또는 입양자녀 포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3.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단, 할가주택 소유자인 경우 청약통장가입 요건 및 일부항목 적용 배제)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적용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1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①+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한다.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상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 소유에 따른 감점제 제74조에 의거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및 청약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중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 따라 가점항목에 없음 (2015. 02. 2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1. 기점항목별 적용기준

구 분	신 청 자 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여서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무주택요건에 관한 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청 · 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되 이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3.29)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및 직계존속 포함)는 그 가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며 이때 혼인신고일 현재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4) 1개의 외주택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3.29)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주민등록표상 등재 기준일(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미혼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3.29)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초 가입일로부터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가입기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항목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2.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구 분	신청자격	당첨자 발표	동 · 호 발표	계약체결
특별 공급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 일시 : 2017. 04. 03(월) 17 :00 • 장소 : 당사 분양홍보관 게재	• 일시 : 2017. 04. 11(화) • 확인방법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및 당사 홈페이지	• 일시 – 2017.04.17(월)~2017.04.19(수) (3일간, 10:00 ~ 16:00) • 장소 : 제주 해밀타운 분양홍보관
일반 공급	1순위	• 일시 : 2017. 04. 11(화) 08 :00 • 장소 : 당사 분양홍보관 게재 / 금융결제원홈페이지 (www.apt2you.com)		
	2순위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분양홍보관에서 특별공급 당첨자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문자 공급하고, 진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 · 호수 배정추첨이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거주 당첨사실 무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임이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과정에서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택소유 및 거주사실 적격자로 계약을 체결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닐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후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당일 분양홍보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정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어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적격기능성 때문에 절대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 기준일 및 유의사항

구 분	기 준	점수	비 고
무주택기간	1년 미만	2	
	1년 이상 ~ 2년 미만	4	
	2년 이상 ~ 3년 미만	6	
	3년 이상 ~ 4년 미만	8	
	4년 이상 ~ 5년 미만	10	
	5년 이상 ~ 6년 미만	12	
	6년 이상 ~ 7년 미만	14	
	7년 이상 ~ 8년 미만	16	
	8년 이상 ~ 9년 미만	18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15년 이상	32	
부양가족	0명	5	
	1명	10	
	2명	15	
	3명	20	
	4명	25	
	5명	30	
	6명 이상	3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개월 미만	1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1년 이상 ~ 2년 미만	3	
	2년 이상 ~ 3년 미만	4	
	3년 이상 ~ 4년 미만	5	
	4년 이상 ~ 5년 미만	6	
	5년 이상 ~ 6년 미만	7	
	6년 이상 ~ 7년 미만	8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제외, 2순위 :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 · 지점 비치)
- 청약예금 또는 종합저축통장(1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입증서류 추가제출
(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순위 신청자에 한함)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 본인 및 배우자 외에 이외에는 모두 다른 세대원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양가족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 2인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될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④ 1개의 외주택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3.29)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초 가입일로부터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항목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유의사항

- 간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배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는 주택소유자로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였거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전제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